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9

□ 제안이유

○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,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자구 수정 (도지사 → 충청북도지사, 도의회의원 → 충청북도의회의원)

○ 제8조제3항을 "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"로 변경

□ 첨 부

○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○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2항중 "도지사"를 "충청북도지사"로 한다

제4조제3항중 "도의회 의원"을 "충청북도의회의원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능) ①(생략) ②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·관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(생략)	**제3조(기능)** ①(현행과 같음) ② ..... 충청북도지사 .... ③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-②(생략) ③위원은 도의 경제통상국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·단체의 장, 교수, 언론인, 도의회 의원, 소비자·근로자·여성 대표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④(생략)	**제4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-②(현행과 같음) ③ ....충청북도의회의원.... ..... ④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구성)①-②(생략) ③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④-⑤(생략)	**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①-②(현행과 같음)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④-⑤(현행과 같음)